



중소 수출입기업

Free Trade Agreement



활용

성공 지원 프로그램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FTA 활용
성공 지원 프로그램

1

준비단계

1-1. FTA 정보제공

- 1. YES FTA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 04
- 2. 품목분류(HS) 정보제공 | 06
- 3. FTA 활용통계 | 08
- 4.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9

1-2. FTA 맞춤형 컨설팅

- 5. 예산 컨설팅 | 10
- 6. 찾아가는 YES FTA 센터 | 12
- 7. 공익관세사 | 13

1-3. FTA 교육 및 일자리 연계

- 8. YES FTA 전문교육 | 14
- 9. 일자리 지원 사업 | 15

2

활용단계

2-1. 원산지 판정

- 10.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 | 17
- 11.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20

2-2. 원산지 인증 및 증명

- 12.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 21
- 13. 원산지증명서 발급 | 22
- 14. 원산지 간편인정제 | 23
- 15. 원산지 간이발급제 | 24

3

해결단계

3-1.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 16. CO-PASS 조회안내 | 26
- 17.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안내 | 28

3-2. 원산지 검증 지원

- 18. 원산지 검증 | 31
- 19.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 | 35



Chapter **I**

준비단계

- 1-1. FTA 정보제공
- 1-2. FTA 맞춤형 컨설팅
- 1-3. FTA 교육 및 일자리 연계

1 >> YES FTA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YES FTA 포털 개요

- **[목적]** FTA 관련 최신 정보를 one-stop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FTA 통합 정보제공
- **홈페이지 (fta.customs.go.kr)**
FTA 개요, 세율, 원산지검증, 결정기준, 증명서, 확인서, 인증수출자, HS, 협정문 등 정보 제공
- **주요 제공 정보**

FTA포털 메뉴 전체보기			
FTA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란? ▶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 FTA 통합정보 ▶ 공지사항 ▶ FTA 협정문 ▶ 관련사이트 	FTA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정보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증수출자 제도 ▶ FTA 관련법령 ▶ 협정별 물량관리 ▶ FTA 통계정보 ▶ 세율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검증 ▶ 서류보완가이드 라인 ▶ 자가검증 TOOL ▶ 협정관세 적용제한 및 적용분류 ▶ 검증사례 ▶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비즈니스모델 ▶ 한-미 FTA활용 ▶ 경진대회 사례모음 ▶ FTA 용어집 ▶ FTA 교육일정 ▶ HS연계표 ▶ 원산지관리컨담자 인성교육
FTA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자료 ▶ 협정별검행지침 ▶ 협정별서식모음 ▶ 협정별세율정보 ▶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 E-Book-Zone ▶ FTA e-letter ▶ FTA상대국통관정보 ▶ FTA활용률 ▶ 일반자료실 	고객의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기동대 ▶ FTA 고객상담센터 ▶ FAQ ▶ YES FTA 컨설팅 사업 	FTA 확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원산지 확인제 물품 	

1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문 및 양허내용 확인

FTA 협정문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 EFTA	한 · 아세안
한 · 미국	한 · 인도	한 · EU(유럽연합)	한 · 페루
한 · 터키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한 · 베트남	한 · 중국	한 · 콜롬비아	



1 >> YES FTA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YES FTA 포털 개요

2 >> FTA 협정별 물량관리 현황 조회

한-EU FTA 관세율할당품목 목록 Home > FTA 활용 > 협정별 물량 관리

구분	품명	HS 번호 (HS2012기준)	기준물량 (M/T)	잔여량 (M/T)	사용률	물량 초과율	소전매부
한-EU FTA TRQ 선역순 방식	냉동닭치	0303340000 0303390000 0303990000(0303.34- 0000, 0303.39-0000의 것)	1,175.00	1,129.92	3.84		

3 >> FTA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



4 >> YES FTA 컨설팅 사업 신청

▶ YES FTA 컨설팅 사업 안내

- ▶ 사업명 : 2018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 ▶ 사업기간 : 2018. 2월 ~ 11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40%까지 부담)
- ▶ 신청자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단, 직전 2년간 FTA 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 ▶ 컨설팅 유형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C형) 원산지시스템 구축 컨설팅
- ▶ 신청방법 : 사업세관에 E-mail 접수 (2.5~2.28)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희망세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 e-CO 자료교환 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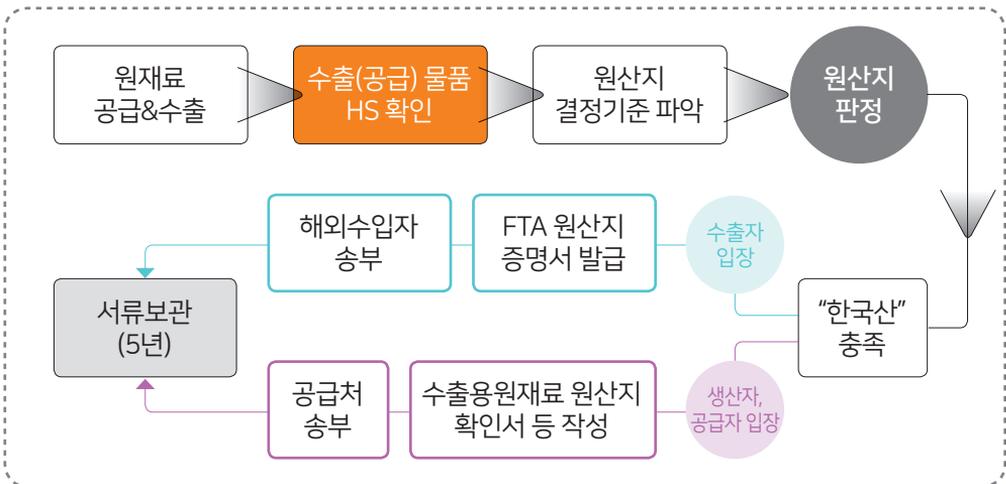
C/O 발급내역·진행정보

CO-PASS 진행정보	CO-PASS Process-Info	CO-PASS 进行情况		
조회설정 (*필수있합니다. 참조코드는 한국 → 중국일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발급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송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한국 → 중국 <input type="radio"/> 중국 → 한국 <input type="button" value="search"/>
협정/국가	-- 전체 -- ~ -- 전체 --	전송구분		
발급번호	<input type="text"/>	참조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2 >> 품목분류(HS) 정보제공

개요

- ▶ **[품목분류(HS)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부여하는 상품분류 코드로 HS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
- ▶ **[HS의 중요성]**
 -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게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당해 물품의 HS 품목분류 확인이며,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완성품과 부분품간의 정확한 HS 품목분류 필요
 - HS 품목분류가 정확해야 FTA 특혜적용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HS 품목분류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서 FTA 원산지 판정의 시작임과 동시에 핵심요소



- ▶ 관세청은 원활한 FT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세계 HS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도 제공



2

품목분류(HS) 정보제공

세계 HS 정보시스템

-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HS정보 등 제공
- ▶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포탈 > 세계 HS 정보 조회
- ▶ 주요 제공 정보
 - HS정보 : 속건표, HS 해설서, 관세율표, HS비교, 세계 HS 개정표 등
 - HS가이드 :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주요 산업별 HS 정보
 -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 사례 등

속건표	0	1	2	3
0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어패류
10	곡물	밀가루·전분	채유종종자·인삼	식물성역스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 식료품	염료·주류·식초	조제사료
30	의약품	비료	염료·인료, 페인트·잉크	향료 화장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관세법 제86조)
- ▶ [신청자] 수출입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 신청자격이 있는 자
- ▶ [UNI-PASS] unipass.customs.go.kr 전자신고 > 품목분류 조회
- ▶ [직접방문]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구) 방문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신청물품 견본 등 제출
- ▶ [효과] 통지된 품목분류는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

3 >> FTA 활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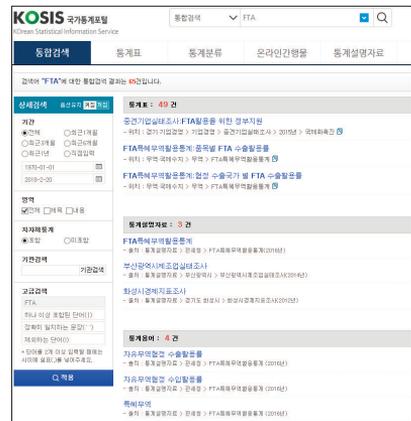
FTA 활용지도 배포

- 전자책 형태로 각종 FTA 수출입 활용률 통계를 분기별로 제공
 - fta.customs.go.kr
관세청 FTA 포털 > FTA 자료실 > E-Book Zone > E-Book
 - 주요 제공 정보
산업별(MTI 1단위 기준) 및 지자체별(전국 17개 시·도) FTA 수출입 활용률 등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주제별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Infographic으로 제공
- * MTI(Ministry of Trade Industry) 산업통상부에서 제정한 산업별 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



국가 통계 포털 제공

- FTA를 체결한 국가간의 수출입물품이 실제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로서 반기마다 작성·발표
- kosis.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중앙행정기관 > 관세청 > FTA 특혜무역활용통계
- 통계 구성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품목별(HS 2단위 기준) FTA 수출입 활용률 등 4종을 국가통계로서 제공





4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요

- ▶ **[현황]** 수출입기업에게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6개 지역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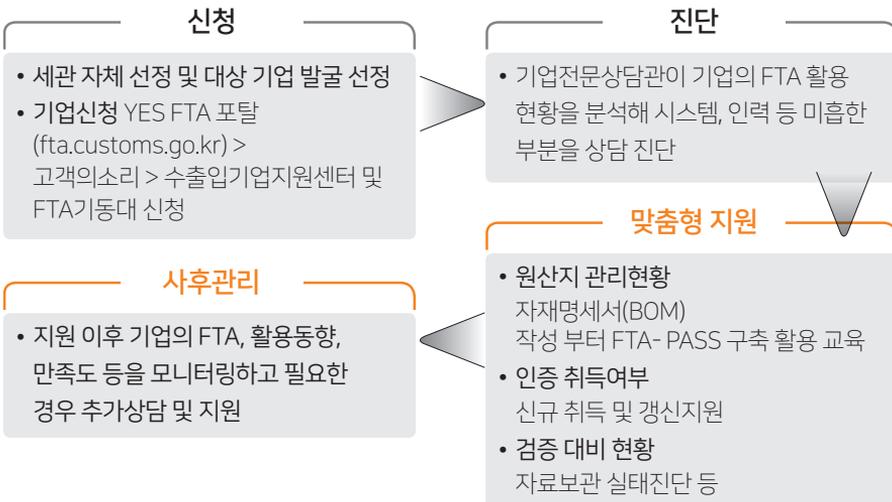
세관명	지원센터 담당자	E-mail
인천본부세관	032 - 452 - 3643	incheonsupport@customs.go.kr
서울본부세관	02 - 510 - 1384	seoulsupport@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051 - 620 - 6953	busansupport@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053 - 230 - 5185	daegusupport@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062 - 975 - 8192	gwangjusupport@customs.go.kr
평택직할세관	031 - 8054 - 7047	fta016@customs.go.kr

- ▶ 중소기업의 FTA, AEO, 해외통관애로를 쉽고 빠르게 맞춤형 해결 지원

FTA	AEO	해외 활용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컨설팅 • FTA 관련 교육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구인-구직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기업 1:1 사후지원 • 국내외 AEO 혜택 모니터링 • 非 AEO 기업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활용애로 상담 • 품목분류 상이, FTA 혜택 불인정 등 해외 활용애로 직접 해결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 FTA 활용지원 프로세스



5 >> 예산 컨설팅

개요

- ▶ **[목적]**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
- ▶ **[사업규모]** 2018년 기준 13.3억원, 650개사 내외 지원(※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 **주요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	세부내용
(A형) FTA 활용 종합	- BOM 작성, 인증수출자지정, 원산지 사전진단,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 및 사후관리
(B형) 사후검증 대응	- 증빙자료 보관실태 진단, 자율관리 지원
(C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원산지판정 기초정보 관리, 현장지원 등

[지원신청] 관할지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e-mail 로 신청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FTA 활용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 [사업금액]**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예산 13.3억 원)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제공 동의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 자료 외
- [신청방법]** 홈페이지(fta.customs.go.kr)



5 >> 예산 컨설팅

세부내역

▶ 신청자격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제조기업 또는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을 공급(예정)하는 중소 중견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② 직전 2년간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

▶ 신청시 준비서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별 세관에 제출
(대상세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 컨설팅 신청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전년도 매출액 확인 자료
- 컨설팅 희망 품목 설명서

▶ 사업진행 절차



▶ 지원유형 및 내용

- ① FTA활용 준비 지원: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기준, 특혜관세율 확인 등
- ② 검증 대응
- ③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 ⑤ FTA 활용 현장 교육(협정의 이해, FTA 관세 특례법 개요 등)

6 >> 찾아가는 YES FTA 센터

개요

- **[목적]** 지역 산업공단, 농공단지 등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FTA 활용 지원
- **[지원방법]**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관할 중소 영세기업 지원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YES FTA 이동센터 운용
세관전문가 및 공익관세사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컨설팅



- **지원 신청 :** YES FTA 포털(fta.customs.go.kr)

공역사항	FTA 동향정보	FTA 교육일정
(주) FTA(영) 9월 1주차	[2017/09/06]	
(주) FTA(영) 8월 4.5주차	[2017/09/05]	
(주) FTA(영) 9월 1.5주차	[2017/09/07]	
(주) FTA(영) 7월 2.5주차	[2017/07/14]	
(주) FTA(영) 7월 1.5주차	[2017/07/14]	
(주) FTA(영) 6월 5주차	[2017/06/28]	
(주) FTA(영) 6월 4주차	[2017/06/21]	
(주) FTA(영) 6월 3.5주차	[2017/06/13]	
(주) FTA(영) 6월 2.5주차	[2017/06/09]	
(주) FTA(영) 5월 5주차	[2017/06/01]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하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하기

합정, 대상국 (Relevant FTA and Country)	합정(FTA) 대상국(Country)	성명 (Full Name)	
업체명 (Company Name)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Phone No)	
업종 Type of Business		휴대폰 (Mobile No)	
		E-mail	
신고세관 Customs in Charge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세관(Seoul) <input type="radio"/> 인천세관(Incheon) <input type="radio"/> 부산세관(Busan) <input type="radio"/> 대구세관(Daegu) <input type="radio"/> 광주세관(Gwangju) <input type="radio"/> 평택세관(Pyeongtaek)		
에프사할 및 문제점 Description of Issues			



7 >> 공익 관세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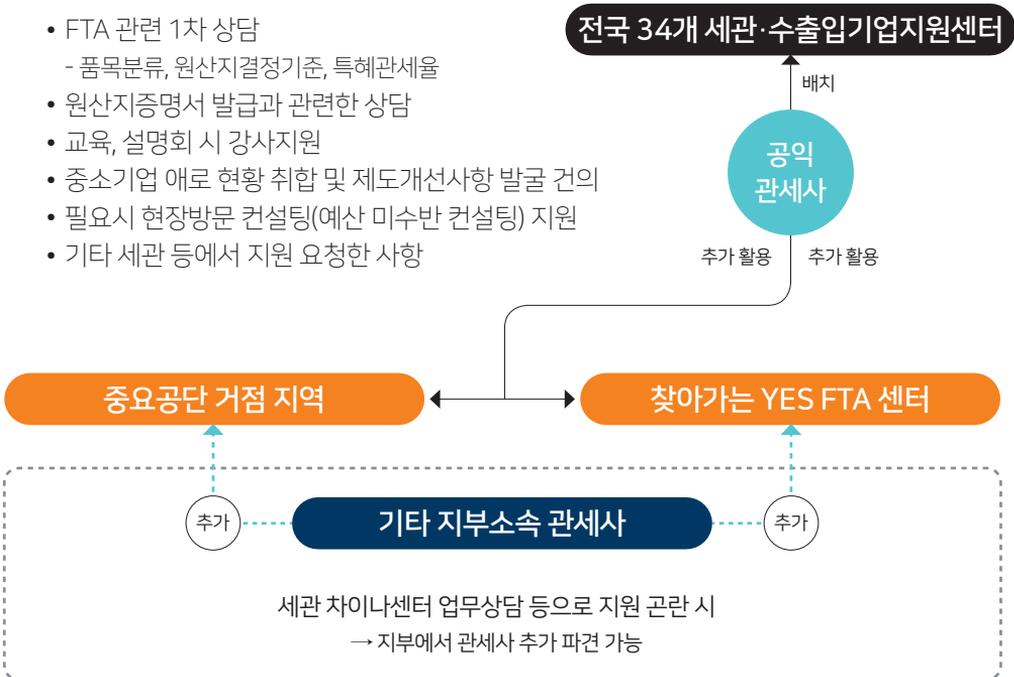
▶ **[공익관세사 제도란?]** 주요공단 등 산업현장 소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한정된 관세청 인력을 지원하여 FTA 활용 컨설팅 지원 (예) 정부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공익법무관 활용

▶ [현황 및 활동]

- 2015년 제1기 공익관세사 위촉 이후 2018년 제4기까지 매년 평균 100여명 위촉
- 한국관세사회 19개 지부와 34개 지역 세관간 연계를 통해 해당지역 중소기업 수출입 등 상담 지원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방문 컨설팅 시 관세청 직원과 함께 컨설팅 실시

▶ 주요업무

- FTA 관련 1차 상담
 -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담
- 교육, 설명회 시 강사지원
-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의
- 필요시 현장방문 컨설팅(예산 미수반 컨설팅) 지원
- 기타 세관 등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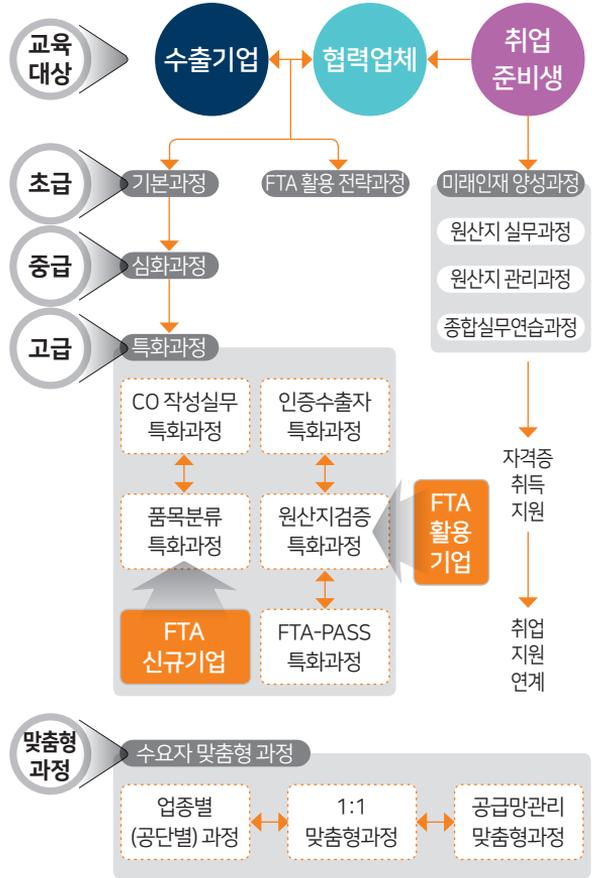


8 >> YES FTA 전문교육

개요

- ▶ **[목적]**
중소기업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
- ▶ **[지원대상]**
중소기업 실무자 임직원, 미래인재 (특성화고·대학생 등) 및 창업자 등
- ▶ **[비용]** 무료
- ▶ **[기간]** 매년 3~12월 (약 9개월)
- ▶ **[신청방법]**
www.yesftaedu.or.kr 접속
YES FTA 전문교육지원센터 >
분야별 신청하기
• 문의: 1544-5702,
yesftaedu@origin.or.kr
- ▶ **[운영지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및 기타희망지역
(교육정원 충족 시)
- ▶ **[교육과정]** 3개분야 12개과정
 - 일반과정 : 기본, 심화, 미래인재양성, FTA 활용전략
 - 특화과정 : 검증, 인증, FTA-PASS, C/O 작성, 품목분류
 - 수요자맞춤형 : 업종별, 1:1, 공급망 관리

YES FTA 전문교육 세부 과정





9 >>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방향

- **[방향]** YES FTA 전문교육 사업에 기반한 FTA 무역인재 양성과 수출기업 성장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 **(1단계)**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한 FTA 무역인재 양성 YES FTA 전문교육 사업 > 미래인재양성과정
- **(2단계)** FTA 무역인재와 수출중소기업간 일자리 연계(잡매칭)
- **(3단계)** FTA 무역인재에 의한 FTA 활용 수출증가 및 신규 고용창출 지원

“FTA 전문인력을 수출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 확립”



FTA 전문인력과 잡매칭(Job-matching)

- **[잡매칭]** 특성화고생, 전문대생, 경력단절 여성 등 FTA 전문교육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
- **(종류)**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경력단절여성 잡매칭 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특성화고생 및 전문대생 잡매칭 행사 등
- **(프로세스)**
YES FTA 전문교육 ⇒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 취업박람회 개최 ⇒ 구인기업별 1,2차 면접 통해 최종 취업



6개 지역 세관별 특성화고생 및 대학생(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YES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정·수시로 채용박람회 등에 FTA 교육 받은 구직자를 참여 시키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Chapter **II**

활용단계

- 2-1. 원산지 판정
- 2-2. 원산지 인증 및 증명



10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

개요

- ▶ **[FTA-PASS란?]** FTA 활용에 필수적인 FTA 원산지증명 및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고 무료 배포하는 통합 원산지관리 소프트웨어
- ▶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원재료 생산/공급자 부터 부품 제조자 및 최종제품 제조·수출자 등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중요



▶ 주요기능

-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관리 : 거래처, 물품재료, HS 코드, 거래내역
- 원산지 판정 : APTA 포함 15개 특혜무역협정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신청 등
-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적 유통 : FTA-PASS 사용자 또는 외부사용자

10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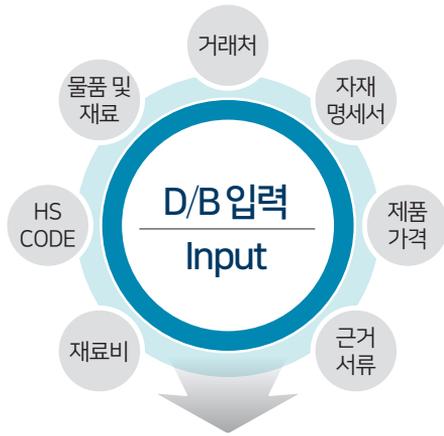
▶ FTA-PASS 프로세스

▶ 2010년 최초 보급 이래 2017년까지

16,415개 기업 활용 중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19만 건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FTA-PASS를 통해 발급



FTA-PASS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증명서
보관서버



원산지증명서
발급·수령



10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

개요

▶ [가입 및 활용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이행지원센터

[전화번호] 031-600-0700 / [홈페이지] www.ftapass.or.kr

[e-mail] fta-pass@origin.or.kr

인천·경기

인천 FTA 이행지원센터
☎ 070-7777-6449

서울·세종·대전 충남·충북·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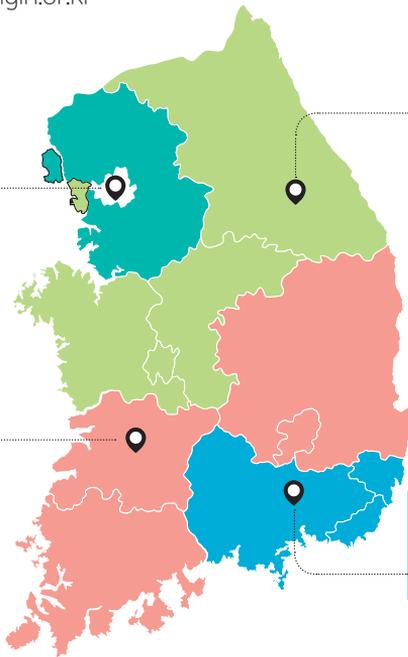
서울 FTA 이행지원센터
☎ 02-3445-6751

대구·광주·전남 전북·경북·울산

대구 FTA 이행지원센터
☎ 053-639-7541

부산·경남·제주

부산 FTA 이행지원센터
☎ 051-620-6987



▶ YES FTA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관세사)의 FTA 활용과 FTA-PASS 시스템 종합지원
- 신청 : YES FTA 포털 참조

* fta.customs.go.kr



▶ FTA-PASS 현장지원

- FTA-PASS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현장 지원 서비스
- 신청 : FTA-PASS 홈페이지

* www.ftapass.or.kr(기업지원 > 현장지원)



▶ FTA-PASS 정기교육

-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FTA-PASS 활용 실무 교육
- 신청 : 관세청 FTA 교육 포털

* www.yesftaedu.or.kr



▶ 교육용 FTA-PASS

- FTA-PASS 매뉴얼 제공
- 주요기능 동영상 강의
- 실습자료를 통한 모의 판정, 증빙서류 발급

* edu.ftapass.or.kr

11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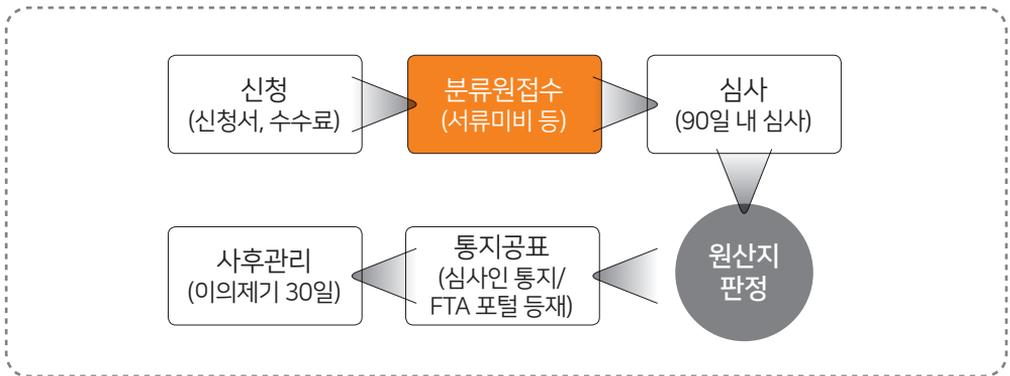
개요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한-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EU, 페루, 터키, 중국, 호주, 캐나다)

▶ 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인 및 신청기관]**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신청
- **[신청대상]** 당해 물품의 역내산 여부, 당해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및 가격 결정방법, 역내부가가치 산정방법 및 조정가격 결정방법 등
- **[제출서류]**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수수료]** 3만원



▶ 결정의 효력

- 관세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전심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음
(유효기간은 3년)



2-2. 원산지 인증 및 증명

12 >>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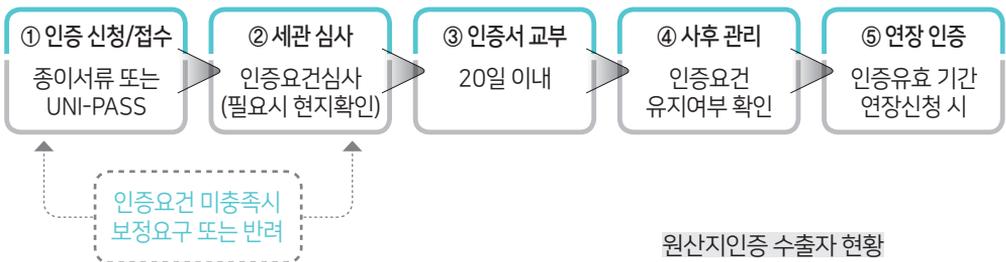
▶ 인증수출자 제도란?

-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로써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에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등 혜택 부여

▶ 인증수출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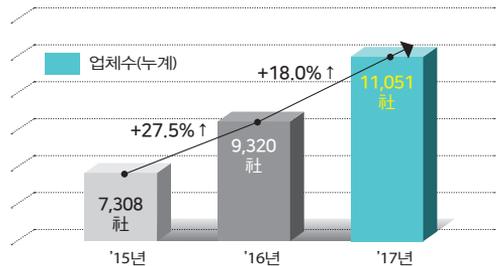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 6000유로 초과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한-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3일 → 2시간 이내), 증명서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생략

▶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절차



※ 인증 신청: 본부세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원산지인증 수출자 현황



13 >>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요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을 확인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주요 FTA 원산지 증명서 비교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베트남)	한·인도	한·EU	한·미	한·중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발급자 (기관)	수출자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세관, 상공회의소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4년	1년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기관발급)

- 세관발급 unipass.customs.go.kr > 증명서 발급 > FTA 원산지증명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cert.korcham.net

>> 온라인





2-2. 원산지 인증 및 증명

14 >> 원산지 간편인정제

개요

- ▶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 **(대상서류)** 법령에 근거를 둔 인증서(등록증, 확인서 등)이어야 함
 - **(해당물품)**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한국산임을 충족하여야 함
- ▶ 1,145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14종 서류의 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전통식품
인증서 (14종)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② 우수관리 인증서 ③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① 등급판정 확인서 ② 축산물이력관리 등록증 ③ 우수 브랜드 인증	① 물김 수매확인서 ②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③ 우수관리 인증서 ④ 지리적 표시 등록증 ⑤ 마른김 수매 확인서 ⑥ 유기수산물 인증서	① 전통식품품질 인증서
품목	고추 등 1,027개	소고기 등 5개	물김 등 81개	김치 등 32개

▶ 원산지 입증시 서류 간소화



15 >> 원산지 간이발급제

개요

- ▶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 만으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고시
- ▶ 고시된 물품(HSK 기준 16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 소명서 작성 허용
- ▶ 간이발급제도 효과

간이발급 비대상 품목

-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최대 12종) 제출 필요

간이발급 대상 품목

- '국내제조확인서' 만 첨부 (나머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활용예시> 조미김 수출업체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

- **(현재)** 조제 김에 대한 재료명세서(BOM) 작성 → 원재료(마른 김, 옥수수유, 참기름, 소금 등)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 → HS 품목번호 변경 여부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개선)**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확인서' 만을 가지고 원산지소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Chapter III

해결단계

- 3-1.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 3-2. 원산지 검증 지원

16 >> CO-PASS 조회 안내

개요

▶ CO-PAS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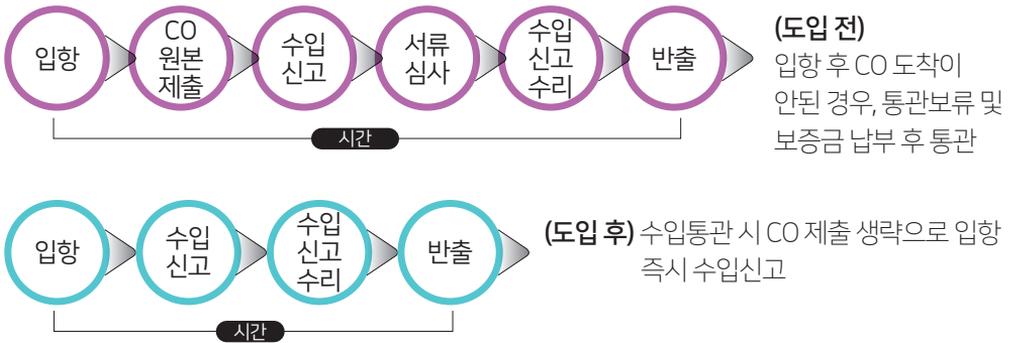
- 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CO : 원산지증명서, '함께' PASS : 통과)으로 FTA 체결상대국 세관당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CO-PASS 운영현황

- `17년 현재 한-중 세관당국간 한중FTA와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ASEAN 등 다른 협정국가에도 확대 적용 예정
- 교환된 정보는 YES-FTA 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적용까지의 진행상황과 진위 여부 조회, 업체별·협정별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중

▶ CO-PASS 효과

- 원산지증명서 원본 확보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



- ▶ FTA 특혜심사 간소화: CO의 인장, 서명 등 형식적 요소에 대한 심사 없이 간이하게 심사
- ▶ 부정무역 방지: 세관당국간 정보교환으로 CO 위조 가능성 원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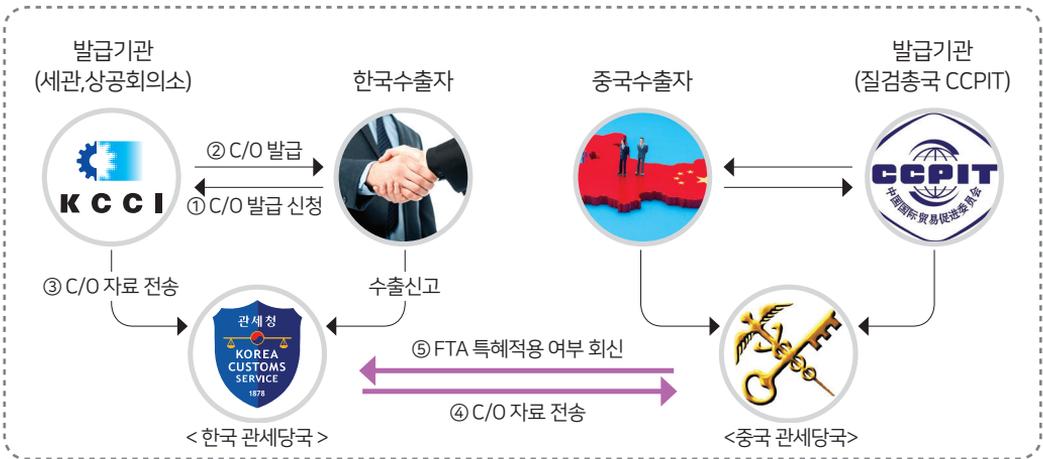


3-1.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16 >> CO-PASS 조회 안내

개요

-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당사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한-중 간 FTA 및 APTA(아,태 무역협정) 화물에 대해서는 전자 원산지 정보 교환만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음



- 원산지 정보 전송 및 통관 상황은 YES FTA 포털이나 모바일 관세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또한, 활용률 통계, 상대국 C/O의 진위 여부, 중국어 버전 서비스 제공

CO-PASS 진행정보		CO-PASS Process-Info		CO-PASS 进行情况			
조회설정 (*발수값입니다. 참조코드는 한국 → 중국일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발급일자	20171209 ~ 20180101	전송일자	20171209 ~ 20180106	[search]			
합정/국가	한-중국 중국	전송구분*	한국 → 중국 중국 → 한국				
발급번호*	C01017XXXXXX	참조코드*	XXXXXX	[초기화]			
조회목록 (송신수신일자를 선택하세요)							
송신구분	송신수신일자	송수신결과	응답결과	응답시간	실패사유	통관여부	통관일자
한→중	2017-12-11 08:01	성공	성공	2017-12-11 08:02	SUCCEEDED	진행중	

[YES FTA 포털]

C/O진행정보		전체 3건	
발급일자	2016-12-09 ~ 2018-01-10	송신구분	한→중
전송일자	2016-12-09 ~ 2018-01-10	송신수신일자	2017-12-11 08:01 ~ 2017-12-11 08:01
합정*	한-중국(FTA)	송수신결과	성공
전송구분*	한국→중국	응답시간	2017-12-11
		통관여부	진행중

[모바일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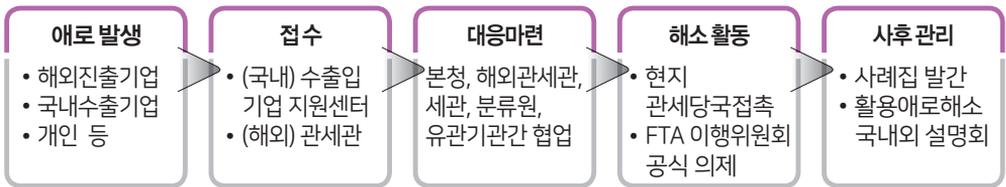
17 >>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안내

개요

▶ FTA 해외 활용애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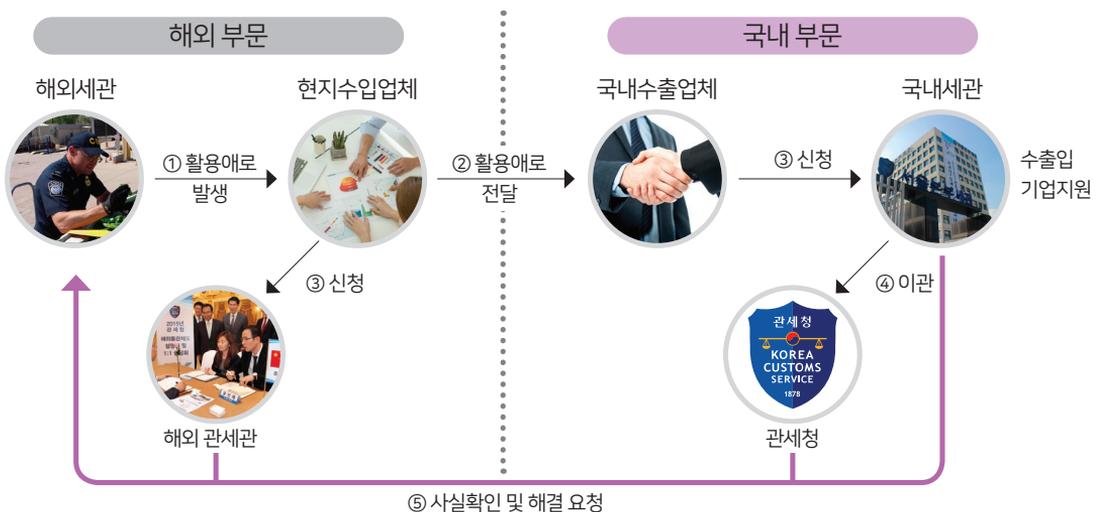
-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통관 단계 및 그 이후 단계에서 FTA 특혜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HS 상이 등 사유로 원만하게 FTA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는 애로상황

▶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절차



▶ FTA 해외 활용애로 접수 방법

- 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접속
- ②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 기동대 지원하기
- ③ 신고서 작성 후 보내기 클릭
- ④ 필요 시 신고세관 담당자와 연락, FTA 활용애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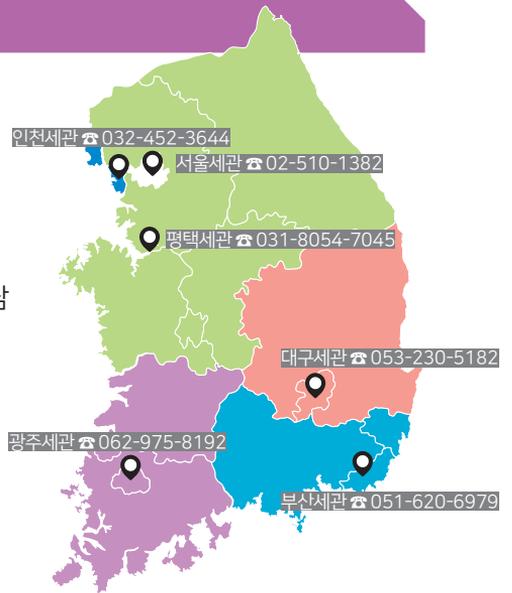




17 >>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안내

해외 활용애로 국내 접수처

- ▶ FTA 해외 활용애로 발생시 신고 방법
 - 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접속
 - ②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 기동대 지원하기
 - ③ 신고서 작성 후 보내기 클릭
 - ④ 필요시 신고세관 담당자와 연락, FTA 활용애로 상담



주요국 해외관세관 현황

- | | |
|----------------------------------|------------------------------------|
| ▶ 미국(워싱턴) (+1)202-939-5677 | 태국(방콕) (+66)2-247-3242 |
| 중국(북경) (+86)10-8531-0844 | 베트남(호치민) (+84)28-3822-5757(내선 139) |
| 중국(상해) (+86)21-6295-5000(내선 205) | 인니(자카르타) (+62)21-2967-2555 |
| 중국(칭다오) (+86)532-8399-7732 | 인도(뉴델리) (+91)12-4462-8500 |



17 >>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안내

주요 사례

▶ 주요 FTA 해외 활용애로 대응 방안

사례 1: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C/O 기재 불일치, 수기서명 요구, 인장, 서명 상이 등
형식 요건 엄격 심사

C/O 작성요령 준수, 상업서류와 C/O 내용 일치,
발급시 컬러로 양면 인쇄, C/O 조회시스템 활용

사례 2: HS(품목분류) 상이

동일 품목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 품목분류번호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특혜세율 배제

상대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품목분류
확인, C/O에 상대국 HS 기재 신청하여 발급

▶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조회사이트 활용

-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홈페이지(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 조회

-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korcham.net/english) ⇒ Reference System에서 조회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CO) issued or certifi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section titled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with input fields for "ID (Reference No.)" and "PW (Reference Code)", and a "Search" button. Below this, a note states: "X Only applicable to C/O's issued by Korea Customs. For C/O's issu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lease visit http://cert.korcham.net/search/index.htm". The main section is titled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sued/certifi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Republic of Korea". It contains three input fields: "Year of Issuance/Certification" (with a dropdown menu showing "2018"), "Reference No" (with placeholder text "Please enter referenceNo only"), and "Reference Code" (with placeholder text "Please enter referenceCode only"). A blue "Check it out"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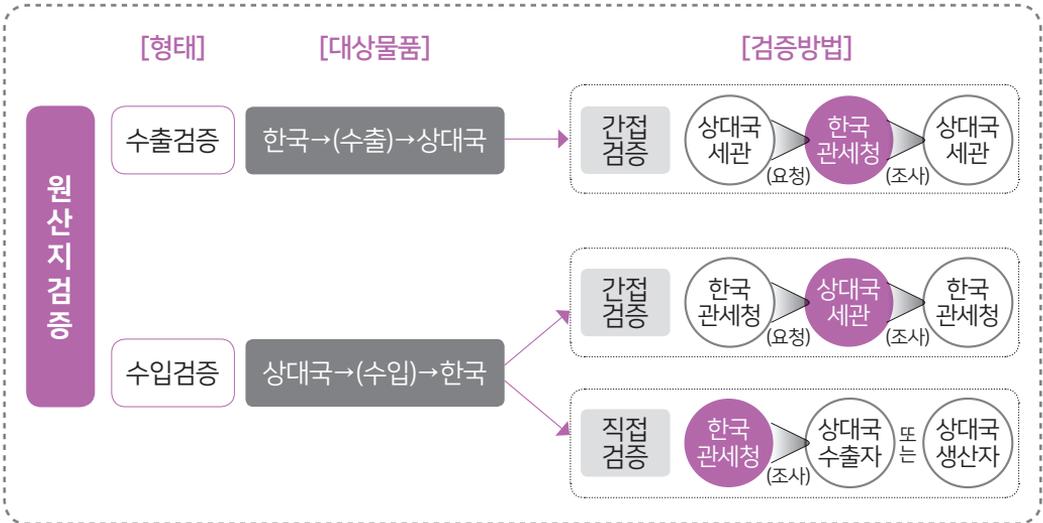


3-2. 원산지 검증 지원

18 >> 원산지검증

개요

- ▶ 원산지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또는 확인절차
 - 수입물품 검증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 대상
 - 직접검증 : 상대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
 - 간접검증 : 상대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조사
 - 수출물품 검증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



18 >>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등이 요구자료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결과 미회신, 현지조사 요청에 대한 미회신 또는 동의 거부
- 상대국 수출자 현지조사시 자료접근 거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 미보관
-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원산지 상이 확인, 제출된 자료에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 불포함
- 수출국 당국에 검증요청하였으나 기한내 결과 미회신, 원산지 상이 확인, 회신내용에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 불포함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한 수입자가 고의로 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사전심사서 기재조건 미이행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거부, 제한 사유에 해당
- 조사대상자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조사 불가, 조사대상자가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원산지검증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 발급하였거나, 기간내 서류 미제출 등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구분	위반 내용	처분
벌금 (제44조)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 경우 - 용도세울 적용물품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보관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46조)	- 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고도 세액정정, 수정신고 미이행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2. 원산지 검증 지원

18 >>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의 방법과 법적근거

- ▶ **[FTA 협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협정에는 원산지검증의 목적, 절차 및 검증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특혜배제 조항) 등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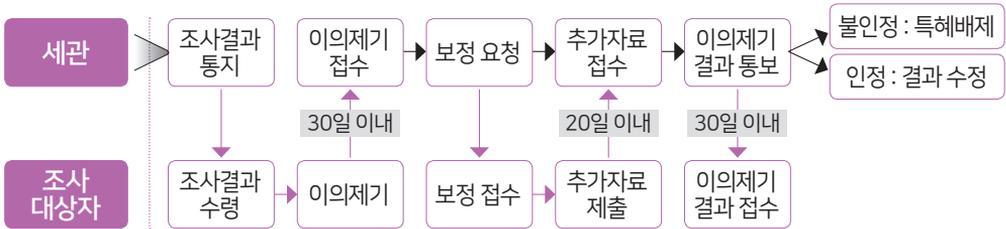
구분	협정규정	검증방식	검증 주체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제5.8조	직접검증	상대국 세관	30일	수출자
싱가포르	제5.7조	직접검증	상대국 세관	30일	수출자
EFTA	제24조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상대국 참관가능)	15개월	수출국 세관
아세안	제14조~제16조	先간접, 後직접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직접) 상대국 세관	2개월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인도	제4.11조~ 제4.13조	先간접, 後직접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직접) 상대국 세관	3개월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EU	제27조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상대국 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 세관
미국	제6.18조 (섬유)제4.3조	(일반)직접, (섬유류)간접·공동	(일반)상대국 세관, (섬유)수출·상대국 세관	(섬유류 간접검증) 12개월	수출자
페루	제4.8조	직접·간접·공동	(직접) 상대국세관,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90일 (간접) 150일	(직접) 수출자, (간접) 수출국 세관
터키	제25조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상대국 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 세관
호주	제3.23조~ 제3.24조	직접·간접	상대국세관 (수출국 참관가능)	30일	(직접) 수출자, (간접) 수출국 세관
캐나다	제4.6조	간접검증	상대국세관	-	수출·생산자
중국	제3.23조	先간접, 後직접 (공동)	(간접)수출국 세관, (직접) 수출·상대국 세관	6개월	수출국 세관
베트남	제3.21조	先간접, 後직접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직접) 상대국 세관	6개월	수출국 발급기관(세관)
뉴질랜드	제3.24조	직접검증	상대국 세관	90일	수출·생산자
콜롬비아	제3.25조	직접·간접·공동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상대국 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수출자, 수출국 세관

- ▶ **[국내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제21조에 원산지 조사(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기타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규정(관세조사(제114조~제116조) 등) 준용

18 >> 원산지검증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 ▶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8항)
- ▶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원산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 가능(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7항)



- ▶ **[검증결과에 대한 불복]**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한 처분(특혜관세 적용배제 등)에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 가능(관세법 제118조 ~ 제132조)

종류	제기기간	재결청	소관위원회	비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관장 관세청장(청구금액 5억원 이상)	관세심사위원회	납부 前
이의신청	처분한 것을 안 날로부터	세관장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		관세청장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3-2. 원산지 검증 지원

19 >>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 ▶ **[목적]**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상대국 검증 前 점검
- ▶ **[대상]** (기업)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참여 신청 → (세관) FTA 활용실익이 큰 업체 선정
- ▶ **[방법]** 대상품목 사전 확인 → 원산지관리 현장점검 → FTA 활용지원 컨설팅(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제공



원산지증명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 ▶ **[목적]**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 시 필수점검사항, 부당특혜신고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 총 18개 항목을 질의, 문답형으로 점검
- ▶ **[대상]**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고 상대국의 검증이 많은 5개협정 대상
* 한-미, 한-EU, 한-중, 한-아세안, 한-터키





중소 수출입기업

Free Trade Agreement



FTA 활용
성공 지원 프로그램



관세청